

■ 경찰공무원 임용령 [별표 7] <개정 2023. 6. 7.>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
(제41조제1항제2호 관련)

시험의 종류		기준등급	
		총경·경정· 경감·경위	경사·경장· 순경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	3급 이상

비고: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.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.